지정검사기관 지정서

1. 지 정 번 호: 제 호

2. 기 관 명:

3. 주 소:

4. 업무수행범위: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직인